**(이하 ”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 ”회사”라 함)은 “고객사”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중 자동(정기)결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객사”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과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데 필요한 자동결제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함)를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자동결제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 : “고객”이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약정 금액을 “고객사”에게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신용카드 관련 이용자 정보를 신용카드사 “고객”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인증키”라 함)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사”가 인증키를 이용하여 해당 결제를 요청할 시 이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

2) 고객 : “고객사”가 요청한 자동결제 약관에 사전동의 하고 “서비스”를 통해

인증키 생성에 동의한 자로서 결제수단의 적법한 명의인

3) 인증키 :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고객” 인식번호로,

“고객사”는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일정 금원의 결제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4) 자동결제 수수료 :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객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임. 단, 지불수단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5) 인증수수료 :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게 지불하는 대가

**제 3 조 (고객사의 준수사항)**

1) “고객사”는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인 자동(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

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

일 전까지 “고객”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

까지 고지할 수 있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 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 조건

마. 거래 조건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 “고객사”는 정규 영업 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 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 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고객사”는 자동(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자동(정기)

결제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캐시, 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하

여 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

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름.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금액

산정 방법

**제 4 조 (정산시기 및 방법)**

1) “회사”의 대표가맹점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후, 매입 요청건을 정산하며

지급일이 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2)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맞춰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3) 세금계산서 발부 : “회사”는 “고객사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산하여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공제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교부한다.

4) “고객사”는 “회사”에게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고객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감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과 지급액 및 차감 부족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제 5 조 (계약조건)**

본 계약의 수수료 및 이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 6 조 (기타)**

1) “고객사”는 “고객”에 대하여 본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결제 약관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회사”가 “고객사”가 인증키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고객”의 월

자동결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본 “서비스”는 “고객”이 제출한 고객정보가 카드사 DB에 있는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에 일치할 경우 “고객”의 인증키를 “회사”가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고객”이 해당 신용카드 결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증키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고객”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한다.

4) “고객사”는 “고객”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권에 기한 결제 청구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취소/환불,철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5)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간에 체결된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내용을 준용하고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와 본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하며,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 종료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고객사 기본 정보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명(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청인** | **\*담당자와경우기입** | | | **신청인 이메일주소** | **\*담당자와경우기입** | |
| **운영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 **정산정보**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세금계산서** | **수신 이메일** | | | | | |

**※ 운영담당자/정산정보/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과 다를 경우에만 기입하십시오.**

**2. 서비스 추가 신청 내용**

|  |  |  |  |  |  |
| --- | --- | --- | --- | --- | --- |
| **추가 서비스 ID** |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 | |
| **자동결제 종류** | **자동결제 수수료** | | | **자동결제 정산주기** | **인증 수수료** |
| **카드 자동결제** | 일반구간 | 판매대금의 2.90 %(VAT별도) | | ※ 일반결제의 카드 정산주기와 동일적용 |  |
| 1구간 | 판매대금의 1.50 %(VAT별도) | |
| 2구간 | 판매대금의 2.20 %(VAT별도) | |
| 3구간 | 판매대금의 2.35 %(VAT별도) | |
| 4구간 | 판매대금의 2.60 %(VAT별도) | |
|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이 달라질 경우 1구간~일반구간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 | | |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회사”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